

기획위원회 규정

□ 개정 : 1997. 9. 1.

□ 개정 : 2013. 3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의 발전을 지향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기획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종합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구·조직의 설치, 개선 및 조정
3. 교직원의 정원 조정
4.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
5. 분과위원회의 보고 사항
6. 기타 중요 정책의 수립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

1. 교무처장, 학생지원처장, 총무처장은 당연직위원
2. 총장이 위촉하는 교원

제4조(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
② 결원으로 인한 보선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학사, 시설, 관재분야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협의하여 위원회에 건의하는 것을 기본 기능으로 한다.

③ 분과위원 및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촉한다.

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구체적인 사항 등은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6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한다.

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.

제7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기획과장이 당연직으로 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.

제8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(이하 “회의”라 한다)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한 학기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분과위원회 회의) 분과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0조(관계부서의 협조) 위원회는 관계 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1조(비밀유지 의무) 위원은 본 대학교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자료에 관해서는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(연구비)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정한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